

# 기안용지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인사 262 - 322	(전화번호 725-7805)	전결규정	조 합 전결사항
처리기간	82.10	시 장		
시행일자	82.10	1982.10.30		
보존연한	1년	4장		
보 조 기 관	부 시 장	82.10.30	2559	
	내무국장	82.10.30		
	인사과장	82.10.30		
기안제입자	한영환	82.10.26 (조광호)		
경 유 수 신 참 조	과 안 참 조	발 신	시 장	봉 계
제 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공고			
(제1안) 내부결재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82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고 별안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문안 : 별첨 참조				
나. 공고 일 : 1982. 10. 30				
다. 대상인원 : 351명				
라. 신청기간 : 1982년 11월 30일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				
관인				
첨부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고문 1부·끝.				
(제2안)				
발송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동 건	1613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2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고,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에
관하여 아태와 같이 지시하니 수당 지급 대상자중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청
호록 조치 할것.
○ 지시 사항
가. 대상자 : 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과 소방
정감이하의 소방공무원
• 5급이상 : 1922.7.1 - 1926.6.30
(폐질의 경우 1931.6.30 까지 포함)
• 6급이하 : 1928.7.1 - 32.6.30
(폐질의 경우 1937.6.30 까지 포함)
나. 신청기간 : 1982. 11. 30 - 1982.12.31
다. 작성 요령
1) 근무년수 : 수당 신청 개시일 기준
2) 정년일 : 6월말(당해년도 1.1 - 6.30까지 출생자)
12월말(당해년도 7.1 -12.31까지 출생자)
3) 정년 잔여기간 : 명예퇴직 지급 신청개시일부터 정년일
4) 퇴직하고자 하는 시기 : 결정통지일부러 20일이내
5) 수당 청구액 산출내역
○ 일반퇴직 : 퇴직월 봉급액 × 1/2 × 잔여월수
○ 상병퇴직 : 퇴직월 봉급액 × 1/2 × 지급규정 배수
6) 정년 잔여기간 계산 : 15일이상은 1월,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상병퇴직자는 6일이상은 1년, 6일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첨부 :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고문 1부.
2. 수당 지급 신청서 1부. 끝.

수신처 : 시산하 전기관

(제3안)

수신 공보관

발신 : 내무국장

제목 시보 게재 의뢰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여 1982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공고를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시보에 게재코자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일 : 1982. 10. 30.

나. 공고문 : 별첨 참조

첨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고문 1부. 끝.

공 고 분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여 1982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2. 10. 30

서 을 특 별 시 장

1. 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과 소방정감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공고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가.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5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자

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2. 수당 지급대상 인원 : 351명

3. 수당 지급 신청

가. 신청기간 : 1982. 11. 30일 - 1982. 12. 6일

나. 신청 절차 : 수당지급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4.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 결정 및 지급

서울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급한다.

5. 수당지급 대상자의 사직원 제출

통지를 받은 수당 지급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기리 수당

기리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을 참고  
하기 바람. 끝.